

의안번호	제 63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동현 의원
발의연월일	2021년 1월 11일

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임동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63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월 11일
발 의 자 : 임동현 의원
찬 성 자 : 박성원, 최경천, 김국기,
김영주, 이수완, 정상교 의원

1. 제안 이유

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화장실 위생 관리 업무 운영을 위하여 화장실 위생 관리 업무 위탁을 전부에서 일부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화장실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 중 “화장실의 자동 물 내림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” 를 “자동 물 내림 장치 설치” 로, 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” 를 “규정 준수” 로 변경함(안 제5조)

나. 화장실 위생 관리 업무의 “일부 또는 전부” 를 “일부” 로 변경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-116호

(2020. 12. 31. ~ 2021. 1. 4.)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”를 “장치 설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”를 “규정 준수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일부 또는 전부”를 “일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·환경 개선) ① (생략)</p> <p>② 교육감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 및 물 절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대변기, 소변기, 세면기는 「수도법」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,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자동 물 내림 <u>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6.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의 <u>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8조(위탁)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화장실 위생 관리</p>	<p>제5조(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·환경 개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장치 설치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규정 준수</u></p> <p>제8조(위탁) ----- -----</p>

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
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----- 일부-----
-----.

관 계 법 령

□ 학교보건법 시행규칙

[시행 2019. 10. 24.] [교육부령 제194호, 2019. 10. 24., 일부개정]

제3조(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) ① 「학교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·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[교사대지(校舍垞地)·체육장, 교사·체육관·기숙사 및 급식시설,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5. 11. 14., 2008. 4. 28., 2018. 3. 27., 2019. 10. 24.>

1. 환기·채광·조명·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1의2.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 2와 같다.
2. 상하수도·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3.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- 3의2. 공기 질 등의 유지·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.
4. 식기·식품·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10. 24.>

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,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

이를 고시한다. <개정 2005. 11. 14., 2008. 3. 4., 2008. 4. 28., 2013. 3. 23.>

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·비치해야 하고,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 <개정 2005. 11. 14., 2008. 4. 28., 2019. 10. 24.>

⑤ 삭제 <2019. 7. 3.>

제3조의2(검사요청 등) ①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4. 28., 2019. 10. 24.>

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4. 28.>

[본조신설 2005. 11. 14.]

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05.11.14.>

상하수도·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(제3조제1항제2호관련)

1. 상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

「수도법」 및 「하수도법」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·관리할 것

2.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

가. 화장실의 설치기준

(1)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, 학생 및 교직원
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

(2)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(상·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)

(3)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

(4)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

(5) 화장실안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 것

나. 화장실의 유지·관리기준

(1)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

(2) 악취의 발생과 쥐 및 파리·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

□ 수도법

[시행 2020. 10. 1.] [법률 제17178호, 2020. 3. 31., 일부개정]

- 제15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)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8.>
- ②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(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.) 및 목욕장업 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1. 14.>
- ③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5. 25., 2011. 7. 28., 2011. 11. 14.>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24.>
-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12. 24.>

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재정 수반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